

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칙은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자격 인정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응시자격)

- 1) 외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단, 해외연수로 인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후 응시자격을 부여함.
- 2)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자

제 3 조 (시험과목 및 시험방법)

- 1)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외과 세부.분과전문과목으로 한다.
- 2)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.

제 4 조 (시험의 시행 및 공고)

- 1)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,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 개월 전에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공고한다.

제 5 조 (응시원서)

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외과전문의 자격증 사본
- 2)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
- 3)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

첨부 (1) 연수강좌, 실습, 학술대회 참가 증빙서류

국내학회 - 평점카드

국외학회 -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

(2) 학회발표 증빙서류

초록집의 표지(학회명, 일자, 장소 등 명기)

초록 복사본

(3) 논문발표 증빙서류 - 논문별책

4)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

5) 사진 3매(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관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)

제 6 조 (시험위원의 선출)

- 1)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과 세부.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, 시험의 채점, 감독 및 필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- 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7 조 (출제 및 시험실시)

- 1) 시험문제는 분과위원장의 책임 하에 분과 별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한다.
- 2) 시험은 분과위원장의 책임 하에 분과 별로 실시한다.

제 8 조 (시험문제 및 배점)

- 1) 필기시험은 80점 만점으로 한다.
- 2) 구술시험은 20점 만점으로 한다.

제 9 조 (채점)

채점은 분과위원장의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합격자 결정)

- 1)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.
- 2)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, 구술시험 10점 이상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.
- 3)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.분과전문의 인정을 증명 교부한다.

제 11 조 (부정행위자의 제재)

- 1)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- 2)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- 3)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보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- 1) 본 규칙은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